

위증죄의 성경적 연구

이 태 언*

<목 차>

- I. 서론
- II. 위증죄의 성격
 - 1. 의의
 - 2. 위증죄의 구성요건
- III. 위증죄의 성경적 입장
 - 1. 의의
 - 2. 구약율법의 성격
- IV. 위증죄의 성경적 성격
 - 1. 이웃에 대한 증상의 금지
 - 2. 거짓 증거하는 것
- V. 결론

I. 序論

인류문명의 역사를 제도사적 입장에서도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制度史란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그 시대를 지배했던 정치·사회적인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조직의 체제에 대한 연구인데 대개는 정치·군사·법률·조세·경제·신분 등의 제분야에 관한 것이다.

그 시대의 제도 특히 법률체제를 고찰해보면 그 시대를 지배했던 이념들을 짐작 할 수가 있는데 비록 법치주의시대(법의 지배에 의한)가 아니었다고 해도 법제를 통해 정치·군사·신분 등의 기본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인류문명사의 제도적 발전 단계는 크게 ① 원시, 내지 고대 ② 중세 ③ 근세 ④프랑스혁명 이후에서 지금에 이르는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일반 역사에 있어서 시대구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법제적입장에서 볼 때 원시 및 고대는 비교적 단순한 시대였기 때문에 법제도도 단순하여 하나의 기본법에 의해 조직이나 행위 또는 재판에 관한 것이나 법적 요소들이 규정되어있었는데 기본법의 내용은 주로 행위나 재판·신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아직은 민형사의 구분이나 생활의 각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법규들이 없었다.¹⁾ 중세에 와서는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법이 국가법의 준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교회법은 주로 조직과 재판에 관한 공법적 내용이 중심이었고 사회생활에 관한 민사나 형사적 규율들은 소홀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중요분야에 관한 기본법 내지는 시행법들이 제정되어 공사법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근세초기의 절대주의 시대에는 왕권절대로 인한 권위주의적 체제가 계속되었는데 법제정의 주체는 고대 이래로 권력자로 그의 의지가 법으로 되어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통치의 필요상 각 국에서 비록 헌법적인 개념은 없었다 하더라도 장문의 기본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들이 제정되어 법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서양 법제적 스타일은 정치적 민주화의 계기가 된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로 이 시대를 전후하여 기본법으로서의 헌법적

1) 최고의 법전으로 보는 BC 18C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동양에 있어 중국법의 입장도 그러했다.

개념이 정립되었고²⁾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므로써 국민들의 의사가 입법에 반영되어 명실상부한 현대법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인류의 정신문화의 가장 빛나는 금자탑으로 이로부터 인류의 문명들이 발원되었다 해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³⁾.

종합해보면 성경의 배경과 적용은 중동의 약소국 이스라엘에 국한시킬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의 존재는 적어도 종교적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민족과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⁴⁾.

성경의 많은 부분은 계약법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현대법의 원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 규정된 법제도의 중심으로서의 기본법은 십계명인데 이는 제 1~제4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지켜야할 종교법적 형태이고, 제 5~제10까지의 6개 조항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할 기본법인데 각 조문이 포괄하는 내용의 방대함에도 규정된 문장을 지극히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이 중에서 제 9계명, 인간상호간의 법규 중 5번째 조항이 위증죄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과 정신은 오늘날의 위증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는 위증죄가 중한 범죄가 아닌 단순히 국가의 재판 기능 등을 해하는 범죄로 축소되었지만 그 당시는 도덕적 인신의 정직성이 강조되던 시대여서 유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살인죄 못지 않게 허로 인해 이루어지는 위증죄는 가중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형을 비롯한 중한 형벌로 처리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법에 있어 위증죄의 성립요건 등을 고찰한 뒤 위증죄의 성경적

2) 최초의 헌법으로 보는 미국의 버지니아 헌법은 1780년에 제정되었다.

3)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례일 뿐 아니라 인문·자연과학적 모든 지혜들이 제시 되어있다.

4) 이스라엘적 성경적 정신이 고대에서는 로마를 통해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동안은 로마의 종교적 전통을 계승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중심국가들에 의해, 그리고 현대에는 역시 성경적 전통을 계승한 미국에 의해 세계 각 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 입장을 연구하였다. 이들 위해서는 다시 위증죄의 성격적 성격과 위증죄의 성격적 내용은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필자의 학문적 한계 때문에 형법적·신학적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도 깊은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신학이 이나 형법학에서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시킬 계기는 되었다고 자위하면서 자신도 이후 좀 더 깊은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다.

II. 위증죄의 성격

1. 의의

위증죄(Meineid)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법률에 의해 선서한 鑑定人,通譯人,翻譯人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위증죄는 연혁적으로 볼 때 종교적 범죄에서 파생된 것으로 *세기에 제정된 로마의 Cannon법에서 선서 위반 행위를 신성모독죄로 처벌하였고, 독일에서도 위증죄를 초기에는 종교적, 윤리적 입장에서 이해하여 오다가 1943년 형법 개정으로 비로소 위서죄(신성모독)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⁵⁾ 로마법과 중세 게르만 법에서는 위증죄의 내용인 선서와 진술을 구별하여 이중 허위 진술의 경우만 처벌하였으나 교회법에서는 선서의 위반은 신에 대한 맹세위반으로 간주하여 이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였다. 독일에서는 18세기에는 위증을 사기죄의 특수 개념으로 해석하였는데, 프로이센 일반 국법에서 위증에 의한 사기죄를 처벌하였고, 19세기에는 본죄를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위조죄의 하나로 규정하였다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 이후 위증죄로 정착되었다.

5) 이태언, 형법각론. 형설 출판사. 2002. p.631.

이렇게 볼 때 위증죄가 근대 성문형법전상의 범죄로 정착된 근본적인 배경은 고대나 그 이전의 종교적, 율법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우리 형법에 있어 위증죄는 행위의 주체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진정 신분범⁶⁾이자 자수범으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이 죄의 교사나 중범은 될 수 있지만 정범은 될 수 없다. 또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증거인멸죄와도 구별된다.

이와같이 현행형법은 위증죄를 처벌함에 있어 선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서를 한 후 위증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선서가 전통적으로 신에 대한 맹세라는 개념을 유지한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선서를 반드시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데, 독일 형법에서는 선서를 하지 않은 허위진술이나 선서를 한 이후의 허위진술 모두를 처벌하고 있어 선서를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요식행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⁷⁾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 위증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파생적인 것으로 불법으로 인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모해 위증죄를,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를 규정하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 범익은 국가의 사법기능인데 반드시 법원의 재판 기능뿐 아니고 징계처분 기관과 같은 넓은 의미의 사법적 처분권이 있는 기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본죄는 국가 재판권 등의 적절한 행사를 그릇되게 할 추상적 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6) 진영석, 형법각론, 법문사.1987. p.81 배종대, 형법각론, 2001. 홍문관. p. 798.
김일수, 이재상

7) 배종대. p.795

2. 위증죄의 구성요건

1) 주체

위증죄는 형법 제 152조가 규정하는 국가법익에 관한 범죄로 본죄의 주체는 법령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자에 한하여 성립되는 진정 신분범이다.

(1) 법령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법률이나 명령은 형사소송법 뿐 아니라 비송사건, 징계사건, 기타 특별법에 의한 행정사건에 대해 선서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우리의 경우는 선서가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므로,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 선서하지 않은 상태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다.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먼저하는 경우가 있고 진술을 다한 후에 선서를 뒤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서의 선, 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죄는 선서를 한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진정 신분범(구성요건적 신분범)이자 자수범이므로 신분이 없는 자는 간접정범이나 공동 정범의 형태로도 정범이 될 수 없고 다만 좁은 의미의 공범(교사, 방조)만 가능하다. 선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한 진술 도중에 다소간 진위에 대한 결함이 있어도 선서 무능력자의 경우와 같이 선서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가 아니면 법률에 의한 선서로 본다.⁸⁾ 그러나 선서 거부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서를 한 경우에는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선서하는 기관

선서는 법원 등과 같이 결정권이 있는, 선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인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 대해서는 선서했다고 해도 본죄의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 피고인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선서 대상이 되지

8) 진영석, p.82. 배종대 p. 99. 이태언, p. 632

않지만 사실상의 공범자는 우연히 그 사건의 피고인임으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6세 미만 자는 선서 무능력자로 선서 한 뒤 위증을 하더라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선서의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한 흠에 불과한 경우는 선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예컨대 선서하기 전에 거짓증거를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선서한 법원이 관할 위반인 경우 또는 기소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사유로는 법률에 의한 선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⁹⁾

(3) 증인이어야 한다.

증인이란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실관계를 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법원이나 법관에 대해 당해 범죄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진술하는 자로서 선서를 함으로 본죄의 주체가 된다. 형사피고인 본인이나 그의 공범자 등은 비록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 해도 증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본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위

행위본죄의 행위는 허위의 공술이다.

(1) 허위

허위(Falschheit)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함에는 객관설과 주관설의 견해가 다르다.

① 객관설/ 객관설은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되는가의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의사로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p. 738. 김일수, 형법각론, 법문사, 2001, p.795. 배종대, p.799. 이태언, p. 633.

그것이 우연히 진실과 합치된다면 위증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 또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임에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진술한 경우는 그것이 진실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¹⁰⁾ 이설은 위증죄의 본질을 국가의 재판작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 합치했다면 이로 인해 법원의 심판에 오류를 가져올 위험이 없다고 보는데 있다.

② 주관설/ 주관설은 허위진술의 의미를 선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봄으로서 선서로부터 파생되는 의무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증인이 주관적인 기억을 표준으로 하여 사실대로 말한 이상 그것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¹¹⁾ 그러므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이 우연히 진실과 합치된다고 해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침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위진술이라고 보는 주관설의 입장이 타당한데 증인의 사명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도우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두 설의 차이는 본죄의 보호의 정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느냐(객관설)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느냐(주관설)에 따른 것이다.

(2) 진술(Aussage)

진술의 상대방은 법원 또는 법관이고 주로 구두에 의한 진술을 말한다. 진술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으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 주관적인 평가나 법률효과에 관한 설명 등은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위증이 아니다. 여기서의 사실은 외적인 사실 뿐 아니고 감정, 동기, 목적, 관념, 기억 등 내적 사실도 포함한다. 진술은 주로 구두로 하지만 거동이나 표정에 의해서

10) 이재상, 김일수, p. 798

11) 통설, 판례. 김봉태(공저), 형법각론, p.659. 정성근, p.1001. 이태언, p. 634

도 무방하다. 진술의 내용은 반드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실 뿐 아니고 증인 신문 대상인 모든 사항의 진술을 포함한다. 그러나 특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술이 아니다. 진술이 진술자의 기억과 일치하면 사소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도 위증이라 볼 수 없다. 허위 진술 후 공판절차가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위증죄는 성립이 되는데 진술한 사실이 적법한 효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는 본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¹²⁾

3) 고의, 기타

위증죄는 고의범이어서 공술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용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동시에 자신이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험사실에 대한 기억이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허위 사실임에도 진실이라 믿고 증언했다면 이는 구성요건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만 선서를 했음에도 진실을 증언할 의무가 없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다.¹³⁾ 물론 허위진술의 동기나 목적은 물을 필요가 없다. 위증죄는 사법작용, 징계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어도 본죄가 성립한다.

위증죄는 자수범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외에는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으로 본죄를 범할 수 없고 다만 교사범이나 중범 등 좁은 의미의 공범은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했다면 적극설에 의하면 위증교사가 되지만 소극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증교사도 자기 변호권의 연장으로 보아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해서는 안되게 된다. 형사피고인은 본죄의 정범은

12) 대판 82,6,8

13) 이재상, P.743. 김일수, P. 800. 이태언, P. 635.

물론 교사범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범인 피고인이 처벌 안 되는데 교사범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또,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피고 자신이 허위 진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소극설의 견해가 타당하다.¹⁴⁾

위증죄를 범한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한때에는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으로 위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형사정책적 입장 때문이다. 자수, 자백 또는 고백의 시기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어야 하는데 신문질차가 종결한 때로부터 확정 전까지가 되고, 자수나 자백한 자에 한 하여 형이 감면되므로 공범이 자수했다 하더라도 정범의 형은 감면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이와 같은 단순 위증죄 외에도 불법이 가증되는 형태로 제 152조 ②항에서 모해위증죄를 규정하고 있다. 모해위증죄란 형사, 징계 사건에 있어 피고인, 피의자나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인데 모해의 목적이란 피고인 등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모든 목적을 말하고, 반드시 그 목적인 바를 달성했을 필요는 없다. 국가 보안법에서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해 위증을 하면 그 위증한 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¹⁵⁾ 또 법률에 의해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허위의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함으로서도 위증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도 정범자의 처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이나 통역·번역인은 비록 사건을 경험한 증인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으로 그 사건에 관한 물증을 설명한다든지 직접적인 증거물을 국어로 번역이나 통역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에 반해 감정이나 통역·번역을 했다면 위증죄와 같은 결과를 미치게 되므로 처벌도 위증죄와 같고, 이 과정에 모해의 의사가 있었다면 모해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된다.¹⁶⁾

14) 배종대 804 김일수 802 이태언 636 이정원, 각론 법지사. 1999. p.750

15) 국가 보안법 제 12조

Ⅲ. 위증죄의 성경적 입장

1. 의의

고대 이스라엘(히브리인)의 종합법전이자 역사서이며 예언서인 구약 성경은 BC1400여 년경 모세가 저작했다고 하는 첫부분의 5개 경전에 계약법적인 규율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법적규례 중에서도 10계명은 상위법으로서 기본법이고 그 이외의 규례들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법 내지 시행법규에 해당된다. 10계명은 출애굽기 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중 아홉 번째 계명이 위증죄에 대한 것인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지니라”라는 기록으로¹⁷⁾ 이 규정은 오늘날 형법상의 위증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¹⁸⁾ 대부분 지역에 있어 원시 내지 고대 사회에서는 구체적인 범죄로서 살인, 상해 등 인신에 관한 범죄와 절도를 비롯한 재산범죄, 노예 등 신분에 관한 규정이 있었을 뿐 거짓증거를 내용으로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개념이 구체화되지 못해 이의 범죄성 내지는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십계명은 하나 하나가 문장이 간결하여 법문의 내용으로서는 직접적으로 많은 이론들을 도출해 낼 수가 없겠으나 간접적인 배경의 고찰을 통해 십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할 때 오늘날 위증죄의 이론 이상의 많은 법적, 도덕적 의의를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소위 제 9계명인 위증죄는 적극적으로는 범죄적 사건에 있어 증인이 되었을 때 듣고 본 것만 진술해야 한다는 것으로 목격자의 거짓 증언으로 피의자가 상처(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를 옹호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16) 형법 제 154조

17) 출20:16

18) 출애굽기 등의 십계명은 B.C1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BC1800년경에 제정된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위증죄적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으로도 범죄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재판에 있어 증인되는 것을 거절하거나 증인으로 나섰으나 묵비권(침묵)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즉, 부작위에 의한 위증도 작위적인 위증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 9계명의 정신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 거짓 증언함으로써 그를 중상 모략하거나 참소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무죄한 사람이 비방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위해 증언하며 변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줄 알면서 그를 위해 증언이나 변호를 해주지 않으면 적극적인 위증으로 중상모략하여 그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왕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중상 모략적 거짓임을 알게되었는데, 그 후부터는 아버지인 사울왕에게 자진하여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옹호하였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나이다...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¹⁹⁾라고 다윗을 옹호하였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큰 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술 취했다는 비방을 들었을 때, 수석 사도의 입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제자들의 순결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²⁰⁾고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적극적 행위들이 제 9계명인 위증죄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된다.

거짓증거는 반드시 공식적인 증언대에서 뿐 아니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비공식적으로 중상 모략하는 수도 있다. 즉 대중 앞에서 공개적, 직접적으로 매도하는 것 뿐 아니고 마스크 등을 통해 교묘하게 또는 직설적으로 악평을 하거나 헐담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혀는 곧 불이요 불

19) 삼상 19:4-5

20) 행 2:15

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²¹⁾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는²²⁾ i) 증언 자격이 있어야(증인적격)한다. 즉, 현장의 목격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로 알고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현능력이 있어야 한다. 잘못 알고서 증언한 경우에는 위증이라기 보다는 유언비어가 될 것이다. ii) 증언자는 자기가 알고있는 사실을 정직하게 진술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은 판단할 사람들이 내릴 것이지만 증인으로서의 의무는 증언의 내용이 많던지 적든지 간에 자기가 알고있는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증언 자체에는 거짓이 없었더라도 평가자들에게 증언자의 인상이 진실치 못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말하는 분위기를 교묘히 조작하여 증인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든지 강조해야할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약간의 불이익이 될 부분을 강하게 큰 일처럼 강조했다면 그것이 확대되어 듣는이(평가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넓은 의미의 위증이 되는 것이다. 물론 증인의 표현력의 부족 등으로 듣는 이들이 오해하는 수가 있어 증언자의 진술 내용이 바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같은 경우는 위증으로 볼 수는 없다 해도 이 같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주의를 해야 한다. 혀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증죄는 혀에 의해 살인이나 어떤 범죄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이 아무 소용이 없게된다. 筆誅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붓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고, 舌誅라는 말은 혀바닥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뜻한다.²³⁾ 맹자도²⁴⁾ 양나라 혜왕을 가르칠 때 殺人以擧

21) 약 3:7-10

22) 김홍전, 십계명 장해. 성약. 1996. p,221.

刀有以異呼라고 했다. 심지어는 평론을 함에 있어서도 남에 대해 또는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고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 평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마스크 등을 통한 문학이나 예술 등에 대한 잘못된 평론이 작가의 의욕을 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 9계명 거짓증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웃을 험담하거나 그들에게 불명예나 신용의 상실 등을 가져준다면 어떤 것이든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된다.²⁵⁾ 위증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가장 가증스러운 것으로 보신다.²⁶⁾ 다만 주의 할 것은 이웃을 해하려는 나쁜 마음이 없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에 대해 경고하는 행위도 비판받을 일로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과 증오심뿐이므로 이 같은 행위는 위증죄로서의 거짓증거(false witness)가 아니다.²⁷⁾ 죄악의 근원은 오직 인간의 증오심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웃)의 비행을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경우는 먼저 나 자신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지 먼저 자신의 행위를 점검해 본 후 책망할게 있으면 책망한뒤 나의 눈길을 다른 형제들에게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의 바른 순서이다.²⁸⁾ 결국 거짓증거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i) 남을 가해하기 위해 거짓말·거짓증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본래의 뜻과 ii)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증인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더 확대하여

23) 양의 헤왕이 맹자에게 질문을 하기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고나 막대기로 때려서 죽이는 것이 다릅니까? 물었더니 맹자는 “다름이 없습니다”고 대답했다.

24) 맹자는 유가의 한사람으로 성선설을 주장하여 인간성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仁과 德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면서 자연법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민이 제일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나중이라고 하여 BC 4세기경에 벌써 민중중심의 정치사상을 표방하였다.

25) 칼빈, 기독교강요2, 8.47, 칼빈 Sermon upon the fifth book of Moses, four books of Moses, vol.3, p.179

26) 벤자민 팔리(박희석), 칼빈의 십계명 설교, 성광, 1991, p.358.

27) 벤자민, 앞의 책 p.364.

28) 벤자민, p.373.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입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²⁹⁾ 성경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이 너를 의롭다고 하고 네말로 네가 정죄함을 얻으리라”³⁰⁾고 했다. 곧 네 언어로 인해 네가 심판 받을 것인즉, 언어는 진실하다는 뜻이 된다. 성경이 거짓증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³¹⁾ 1) 사실과는 부합하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인데 그 삶에 대한 여러 말 중에 거두절미하고 가장 불리한 말만 딱 잘라 말하는 경우이다. 전후문맥을 보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도 가장 나쁘게 말한 부분만 떼내어 말하는 것이다. 2)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문자적으로 전해도 문제가 된다.

3)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일삼는 습관은 큰 죄이다.

4)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도 말자.

5) 타인의 결점이 드러나거든 자신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먼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6)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좋다.

7) 남이 내게 거짓과 증상으로 고통을 줄 때, 이 말에 화를 입을 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로³²⁾ i) 공평해야 한다는 것인데, 비록 가난한자의 송사라도 공평하게 해야하며 ii) 압제하지 말아야하고, iii) 논단하지 말아야 하는데 백성중에 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네 이웃³³⁾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말아야 하는 것, iv) 원

29) 홍정길, 십계명 강해, 새순출판사, 1991, p.176.

30) 마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1) 홍정길, pp.177-186.

32) 트리니티 말씀대전편찬위원회, 출애굽기 2권, 목양서원, 1990, p.423.

33) 성경에서의 이웃은 친구, 동포(출2:13), 민족(렘46:16), 이웃집(신13:24), 상대

망하지 말아야 하며, v) 이웃을 도와야 할 것 등이 내포되어 있다.

2. 구약 율법의 성격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는 구약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 율법의 현대적인 의의 및 성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언약인데 언약이란 두 명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두사람 모두 언약에 명시된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구약의 언약은 종주권 언약(surerainty covenants)으로 이는 군주(suzerain:주권자)가 힘이 약한 종속적인 족인(vassal)이나 노예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형식이다.

이 같은 입장의 언약은 주로 봉신에게 더 많은 혜택과 보호를 보장하게 되어 있는데 봉신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율법에 명기된 처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 이때 봉신들의 충성의 내용은 언약에 규정된 행동규범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약의 율법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십계명 등의 규례들은 야훼와 그의 봉신인 이스라엘(히브리민족)간의 결속적인 계약으로 이스라엘은 야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보호에 보답하기 위해 언약율법에 규정된 600여 개의 규정들을 지켜야만 했다.³⁴⁾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가 야훼와 맺은 언약은 아니다. 구약은 옛 언약(covenaar)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구약 가운데 새 언약(신약)에 의해 다시 새롭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전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즉, 구약의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신약에서 재 천명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오늘날의 우리들, 곧 하나님 백성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³⁵⁾ 신약과 구약은 동일하지 않는

편 등을 뜻하고 있다

34) Gorden T.Douglas Stuart(오광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1990, p.211.

35) 룰 6:14-15

데 신약에서는 기본적으로 충성 그 자체는 같으나 구약과 다른 순종과 충성을 기대하시지만 그 방식이 바뀐 것이다.

옛 언약(구약) 중에는 새 언약에서 분명하게 갱신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에 해당되어, 폐기되어진 규례들은 i) 이스라엘의 시민법과 ii) 의식에 관한 제사법들이다. 이 법들은 출애굽 시기를 중심한 구약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에 대해 전혀 무관한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의식과 시민법적 율법의 내용들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효과를 지니는 (once-for-all) 제사를 드림으로³⁶⁾ 구약의 규례들은 즉시 옛 시대의 지난 유물이 되고 말았고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 새로이 약속된 신약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구약을 대체 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1점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다 이루신 후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즉, 신약적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이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은 유효한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구약의 일부 언약중에서도 새 언약에서 언급이 되어 효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십계명³⁷⁾과 신명기 6장5절과 레위기 19장18절의 두 큰 계명들,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일부 내용들로 야훼께서는 이 같은 내용들은 계속 지켜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5) 라는 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 19:18)인데 예수께서는 이 바탕 위에서 몇몇 구약 율법을 발취하여 그것들을 새로 적용하셨는데 율법의 원래 범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다시 정의하셨다.³⁸⁾ 긍정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36)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는 제사로

37) 십계명은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마 5:21-37)

38) Gorden, Ibid. p.214.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구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은 타당치 않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얼마나 높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표준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서 그 율법들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³⁹⁾ 물론 율법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충성의 서약을 나타내는 증표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약의 율법은 순종할 때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 은혜로운 선물이지만 구약의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기 응변적이고 귀찮은 규율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⁴⁰⁾

위증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의 은총(the gift of speech)을 오용한 것으로 거짓말은 본래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⁴¹⁾

제 9계명은 이웃의 평판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모함의 초래할 결과들을 염두에 두어 i) 밤에 이웃의 잠을 도적질하고, ii) 심한 비방과 거짓증언이 이웃의 생명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이웃을 걱정시키고 낙심시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살인죄와도 관련되어지는 것으로⁴²⁾ 보기도 한다. 이 거짓증거는 거짓말을 토대로 그 외 다른 어떤 추가적인 범죄를 행함이 없이도 다른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는 격이 되어 큰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보신다.⁴³⁾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을 미워하시므로 에덴동산에서의 타락이후 서로를 파멸시

39) 오광만역, p.215

40) Douglas, P.228.

41) 요 8:44, 창 3:4-5

42) 에디스웨퍼(로고스번역위원회), 성경연구울시리즈(30권),출애굽기,도서출판,로고스,1986.P192.

43) 잠 6:16-19

키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율법에서 제 9계명을 규정하신 것이다.

3. 위증죄의 성경적 성격

위증죄는 행동이 아닌 말로서 행해지는 범죄이다. 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인데도 거짓증언의 도구로 쓰여짐으로 불의의 병기가 된 셈이다. 제 9계명은 혀가 나쁜 일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혀의 무서움을 일찍이 간파하시고 울타리로서 이빨과 입술을 만드셨다. 그리고 제 9계명은 혀를 둘러싼 제 3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제 9계명은 이웃에 대해 편견이나 비난하지 말 것을 직접적인 규제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위증죄는 첫째로 이웃을 증상하지 말 것과 둘째로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증언)하지 말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이웃에 대한 증상의 금지

증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일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증상이란 구약 성경 시편의 기록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는 것”이다. 증상의 대표적인 성경적인 예는 바울사도가 당했던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증상 모략하는 무리들이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좋다고 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⁴⁴⁾ 하는 말에 대해 말을 약간 바꿈으로서 의미를 전적으로 다르게 모략한 것이다. 사람의 명성은 이 같은 증상에 의해 손상을 받게되는데 증상의 위력은 대단하여 거룩성조차도 순간적으로 파괴하게 된다. 성경에는 남을 포함하는 증상적 행위들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i) 지상에서 가장 무죄하셨던

44) 롬3:8

그리스도를 죄인의 친구라고 증언한 것이나, ii) 세례요한과 같이 철저하게 검소하고 엄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귀신들렸다고 한 것 등이다. 예나 지금이나 혀로 이루어지는 증상모략의 피해가 큰 것으로 혀로 인한 상처가 검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큰데 즉, 혀는 검보다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⁴⁵⁾ 그러므로 혀가 입힌 상처는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정이 있는 체 하면서 그를 증상모략 하는 것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비열한 행위인 것이다. Jerom은 “아리안파는 친절을 과시하여 내 손에 입을 맞추면서도 나를 증상하였고 내 목숨을 노렸다”고 슬회한 바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 위증죄에 해당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헛된 소문을 철저한 조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거짓 소문을 내어서도 안되겠지만 항간의 증상적인 뜯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구약 시편에서도 “누가 하늘나라에 가리이까?(Quis ad coelum?)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하니 하며” 라고 노래하였다. 남을 모함하는 사람마다 그의 혀속에 마귀를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합당한 근거없이 타인을 모함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중상이 되어 위증죄의 전형적 내용의 하나가 된다.

2) 거짓증거 하는 것이다.

거짓증거의 상대방인 피해자도 자기이외의 모든 사람 곧 이웃이 된다. 이웃을 치서 거짓증거 한다는 뜻을 분석하면 3가지 내용에 해당되는데 i) 말하는 것 ii) 증거하는 것 iii) 맹세하는 것이다.

(1) 위증죄의 형식은 먼저 말로서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말하는 것으로 거짓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⁴⁶⁾으로 거짓말보다 더 하나님께 받

45) Augustine, *Majora sunt linguae vulnera quam gladii*

46) 잠 12:22

대되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를 끌어들이게 된다. 압살롬⁴⁷⁾은 서원한 바를 갚으려고 헤브론으로 가는 승낙을 받기 위해 아비인 다윗왕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행위는 또 다른 범죄로서 반역죄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⁴⁸⁾ 거짓말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동체적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면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게되고 이로서 사회적 신뢰성은 깨어지게 되어 공동체적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혀 속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사단이 마음속에 가득한 자”⁴⁹⁾인 것이다.

거짓말하는 죄는 단순한,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하고 이 같은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불경을 범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도행전에는 자기재산을 다 팔아 헌신하면서도 재산의 약간을 감춘 후 거짓말로 이것이 전부라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 죽사한 기록이 있다⁵⁰⁾ 지옥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곳에는 뜨거운 용광로가 활활 타고 있어 거짓말하는 자마다 빠트림을 당하여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게 된다고 한다. 계시록에도 “술객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⁵¹⁾고 기록함으로써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할 때가 있는데 맹세하기 전에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먼저

47) 압살롬은 다윗왕의 장남으로 부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48) 삼하 15:7

49) 행 5:3

50) 행 5:5

51) 계 22:15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본 후에 맹세해야 할 것이고 일단 맹세한 이상 진실된 말만 해야 할 것이다. 일상생활 중에서 맹세의 절차없이 하는 대화라 하더라도 진실한 내용만 말해야 할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무엇이 사람을 하나님같이 되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진실을 말할 때이다”.(Cum vera loquuntur)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하늘나라 공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2) 거짓된 것을 증거 하는 것이다.

거짓증거에는 i)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거짓증거 하는 경우와, ii) 다른 사람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거짓증거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거짓증거 하는 것이란 죄가 있는 범죄자임에도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짓증언을 말하는 것으로 악한 사람을 의롭다 하려는 이 같은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우리 사회는 범죄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유리하게 증거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같은 행위는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된다. 범죄자를 위해 거짓증거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범죄적 행위를 정당화하게 하는 악한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를 해치는 거짓증거가 된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이웃을 쳐서 거짓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⁵²⁾라고 했다. 즉, 거짓증언자는 자신의 얼굴을 쇠망치 같이 굳게 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얼굴을 붉히는 등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느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그 같은 자의 혀는 칼과 다름없어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할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상처를 주게 된다. 물론 성경 기록 당시에도 유대 등 중동지역에서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한 때에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기는 했으나 거짓증거는 그로 인해 잘못된 처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을

52) 잠 15:18

비틀게 할 위험성이 농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 솔로몬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증인이 위증으로 그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라”⁵³⁾ 고 하였다. 예컨대 거짓증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면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내 놓아야 한다⁵⁴⁾는 것이다.

(3) 거짓된 것을 맹세로 증언하는 것이다.

재판정에서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는데 선서는 바로 맹세와 같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대인 관계에 있어 자신의 신용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맹세라는 말을 헛뜨게 쓰서는 안된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이는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내 이름을 가리켜 망녕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⁵⁵⁾

고대 스쿠디아인⁵⁶⁾들은 사람이 거짓말과 맹세를 같이 묶어 놓으면 그는 머리를 절릴 것이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죄는 사람들 사회에서 모든 진실과 신뢰를 송두리채 박탈해 버리기 때문이다. 거짓 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진실이라 맹세까지 하는 자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4) 위증죄의 성경적 내용

성경적인 위증의 개념은 오늘날 형법상의 위증죄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현대의 모든 문화 현상들, 그 중에서도 근본적,

53) 잠 19:5

54) 신 19:18-19

55) 수 5:2-4

56) 스쿠티아인, 고대 그리스인은 흑해 북쪽 돈강에서 프루트강에 이르는 춘원지대를 스퀴티아(skythia)라 했고 그 초원에 살던 이란계 민족을 스퀴트인이라 했다.

주도적, 문화 현상인 법규들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종, 환경, 기후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이었다. 동양과 서양 또는 중동이라는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 인식과 전통이 다를 수 있으나 인류 사회는 선사나 고대에서부터 비록 느끼기는 했으나 지역간의 교류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라 해도 얼마 뒤에는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엄밀한 의미에 있어 고유한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율례들이 형성된 시기는 적어도 3400여 년 전의 일인데 이 시대 지구상에 있어 가장 선진 지역이 중동과 이집트를 포함한 오리엔트 지방인데 문화는 물과 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엔트 문화가 이후 동, 서양 특히 서양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대화 이후 각 국의 법제는 내용적으로는 고유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이 되었는데 우리의 경우 19세기 서양법제를 접하기 전까지는 동양고유의 중국적 법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에는 서양법을 계수하여 우리의 법체제를 새로이 정비하는 과정에 서양법의 정신이 되고 있던 성경적 규례들이 우리의 법제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말을 바꾸면 현대 한국법들도 그 사상적 배경에는 기독교적, 성경적 규례들이 상당부분 이전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성경적 위증죄를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서 위증죄의 배경으로서의 위증적 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개혁교회보다는 모든 면에서 진보적 성향을 띄고 있는데⁵⁷⁾ 가톨릭적인 명분을 위한 것이라면 거짓말이든 거짓맹세든 면제를 받아 용납이 된다고 한다. 특히 비 공식상의 거짓말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와 관련된 범죄적 상황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거짓말 중 선별적으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은 합법적이라는 결과가

57) 진보적이란 말은 개방적이어서 융통성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된다. 그러나 어그스틴이 “설혹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확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Propter Dei gloriam) 거짓말하는 것은 결코 합법적이지 않다.”고 한 진의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것을 양심의 문제로 삼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책망 받아 마땅하다. 성경에서는 i) “앞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⁵⁸⁾고 함으로서 ii)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리라 하오며⁵⁹⁾라고 함으로서 iii) 이성음은 패역한 성음이라. 열왕과 각도에 손해가 된것을⁶⁰⁾ 바울은 어떤때는 폭동의 교사자로 또 사회를 어지럽히는 당파의 두목으로 중상·모함을 당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전해서 중상하게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경향도 있으나 이것은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이다. 사람을 깎아 내려서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화폐(동전)을 깎아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악하다. 타인을 비방하여 중상 모략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i) 먼저는 비방 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ii) 비방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비방 당하는 쪽에 대해 가혹한 생각이 일어나게 함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iii) 거짓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데 실은 이것이 더 큰 범죄적 결과가 된다. 모함으로 타인을 죽게 하는 것은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죽이는 것이 되고 타인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자신이 이웃의 밭에 곡식을 탈취해가거나 상점의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보상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름에 오점을 끼쳐놓는 것은 백지위의 오점과 같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무익한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불의한 비방이 정죄를 안 당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현실적인 살인이나 절도와 마찬가지로 언

58) 시 50:20

59) 렘 20:10

60) 스 4:15

젠가는 타인의 이름을 죽이거나 오점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인데 이 같은 행위들이 세상 법으로는 죄가 되고 안 되는 것과는 별 문제이다. 디오게네스⁶¹⁾도 “모든 들짐승 중에서 중상자는 가장 악하다”고 했고 안토니우스⁶²⁾는 “만일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 있다고 전달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 증거를 제시할 정도로 악한자들은 성격상 극악 무도한 자들로서 시민사회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교회 사학자 유세비우스는 경건하기로 이름 높았던 한 미남 청년에 대해 쓰고 있다. 그 청년은 두 사람의 부정한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 맹세와 저주로서 단언하려고 했다. 그 중 한사람은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불로 멸망시키소서”라고 했고, 또 한사람은 “만일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시력을 박탈당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강하게 자신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주장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사람의 맹세를 용납하시어 첫 번째 증인은 집에 불이 나서 불에 타 죽었고, 두 번째 증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의 위증을 고백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울었던 나머지 장님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나봇⁶³⁾에게 억울한 모함을 했던 왕

61) 디오게네스는 아폴로니아출생으로 이오니아의 자연학을 계승하여 아낙사고라스와 레우키포스의 사상을 보충한 질충주의자이다. 프리기아의 아폴로니아에서 아테네로 이사와 당시 유행하던 과학적 이론을 전개하여 아리스토파네스 등으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62) 안토니우스(BC 57년부터 A. 가비니우스)의 부하로 동방원정에 종군하여 무훈을 세우고 J. 카이사르(시저)의 원정 때에는 그의 副將으로 신임을 받았다. BC 49년에는 호빈과 BC44년에는 집정관이 되었고 그해 3월 15일 시저가 암살되자 그의 추모연설을 통해 민심을 사로 잡았으나 암살자들과 타협하면서 서서히 그들을 몰아내고 시저의 후계자로서의 세력기반을 얻게 되었다.

63) 나봇은 뛰어난 사람이란 뜻인데 왕궁 인접한 곳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왕이 포도원을 탐내어 사고자 하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왕비가 포함하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남편인 왕에게 주었다.

비 이세벨이 뒷날 왕궁의 창문아래로 던지워져서 개들이 그녀의 고기를 먹었다.⁶⁴⁾는 성경의 기록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제 9계명, 어떻게 보면 대수롭잖게 보일 수도 있어 범죄적 의식없이 일상적으로 범하기 쉬운 이 계명을 범할 것에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증을 엄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다고 한 것은⁶⁵⁾ 마음을 악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혀를 비방으로부터 깨끗게하기 때문인데 이는 번갯불의 공기에 대한 관계와 같아 번개불로 인해 공기가 정화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이웃과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손상을 끼치는 말이나 증언을 양게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질투와 증오심으로 좀 먹어 가는데 이 같은 마음의 바탕에서는 중상과 거짓증언이 나오게 되어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사랑의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가장 선한 해석을 하게되고 남이 잘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마음의 바탕에서는 제 9계명적인 범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된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에 의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랑의 풍조가 사회적으로 보편화될때 우리 사회의 불신이 치유되어 서로를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상부상조의 풍토가 조성됨으로서 살만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사회적 위치상 타인을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과 자주 접하게 되어 있다면 그들을 의식적으로 신성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 도망길에 오른 다윗에 대해 시므이⁶⁶⁾란 이가 입에 담지 못할 증상으로 욕을 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64) 왕하 9:36

65) 시 19:9

66) 시므이는 벤야미지파로 시울왕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⁶⁷⁾함으로서 상대방의 악한 행위를 선하게 이용하였다.

증상과 모략을 당했으나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자신이 무죄하다면 이로 인해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것을 철벽으로 삼으라(Murus aheneus esto nil conscire sibi)”는 말이 있다. 선한 양심은 거짓증거에 대항할 수 있는 늦 성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아침도 악한 양심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증상도 선한 양심을 해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신원해 주시어 그의 이름을 깨끗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모함당한 의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듯 그의 이름에서 치욕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독신자들은 그들의 모든 증상과 치욕으로부터 “은을 입힌 비둘기 날개같이 황금을 입힌 비둘기의 깃털 같이”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다.

무리한 사람들의 증상에 대해 하나님은 악의에 찬 입을 막아 거짓증거를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거짓 소문은 타인의 이름을 멸하고, 거짓 맹세는 타인의 생명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악인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저 개 같은 자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⁶⁸⁾”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허의 다툼으로부터 지켜주실 터인데 이는 증상모략이 비록 세상적인 법률이나 판단에서는 별다른 범죄 사항이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 계명 중 인간상호간에 지켜야 할 6가지 기본적 규율로 주셨기 때문에

자 다윗을 반영자로 간주하였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왕궁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므로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이 허락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다윗 아들 솔로몬왕때 과실을 범하여 처형되었다.(삼하 16:5-13)

67) 삼하 16:10

68) 시 31:20

이를 위반한 자의 행위는 반드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과 인간 간의 법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 도덕적 판단에서 볼 때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증죄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다.⁶⁹⁾

1)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라도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2) 남에 관해 거짓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lying)이 아니고 위증(perjurg)·증상(slander)을 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해 악의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3) 자기에게 관해서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자기의 출신, 학벌, 가족관계, 교우관계, 결혼관계, 직업이나 재산 등등을 속이는 등을 말한다.

4)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된다. 사실상 모든 거짓말 중에서 가장 중대한 거짓말은 권능자를 속이는 것으로 이는 전능자를 만홀이 여기는 것이 된다.⁷⁰⁾

거짓증거가 가지는 특징은 ① 서로 합하지 못한 것인데⁷¹⁾ 증인들끼리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② 참되지 못한 것⁷²⁾이며 ③ 사단(마귀)의 역사이고⁷³⁾ ④ 남을 해치는 것⁷⁴⁾이다. 거짓증거의 종류로는 i) 허망한 풍설(출23:1) ii) 위증(신19:16) iii) 거짓말(잠19:5) iv) 거짓행위(시119:12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와같은 거짓 증언하는 사

69) http://www.afck.or/tidings/ten/ten_9ht

70) 갈 6:7

71) 막 14:56

72) 요 8:13

73) 살후2:9-10

74) 마 26:19

람을 위증자(시 27:12), 망령된 증인(잠 6:19), 불의한 증인(시 35:11),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잠 25:18)이라고 하였다.

이웃에게 해서 안되는 불의한 행위로서의 거짓이 갖는 의미는 i) 어떤 사실을 부인하며 거역하는 뜻이 있고, ii) 속이는 말이며, iii) 미워한다는 뜻과, iv) 공허하고 허무한 말이며, v) 망령된 말이란 것이 함축되어 있다.⁷⁵⁾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증거 하게되는 이유는 ① 욕심 때문일 경우가 많다. 이때의 욕심은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이웃이 곤란 당하는 것을 즐기려는 심리 또는 이웃이 잘못되는 것을 즐기는 심리 등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② 두려움 때문에 거짓증거를 하는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이 폭로될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위해 거짓 증언하는 경우이다. ③ 교만함으로 인한 거짓 증언인데 이는 선량한 사람을 손상시키려는 의도에서이다. ④ 자랑 때문에 거짓 증언하는 수도 있다. 자기의 입장을 과대 포장하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이 같은 위증죄를 범한 자들이 받을 형벌로 i) “자신이 위증한 대로 처벌받아야 한다”⁷⁶⁾ 고 하는데 성경은 재판장이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언이 허위인 것이 드러나 형제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악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ii)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⁷⁷⁾ 거짓증인이 벌을 면치 못할 뿐 아니고 거짓말을 내는 자도 똑같이 처벌되어야 하며 이런 자들은 iii) 패망할 것⁷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였다. 또 저주를 받을 것⁷⁹⁾이라고 했는데 인간들에 의한 형식적인 처벌이외에

75) 트리니티 p.424

76) 신 19:18-19

77) 잠 19:5

78) 잠 21:28

79) 속 5:3

도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 당시 보수적 유대교 지도자들은 맹세 중에서도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와 지켜야 할 맹세로 구분하여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에 대한 거짓증언은 죄가 안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⁸⁰⁾ 이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이웃에 대하여서 증언할 일이 있을 때에 증언을 안하는 경우는 말할 필요가 없으나 거짓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IV. 結論

위증죄의 원형으로서의 제9계명은 현대형법에서의 위증죄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의 속성상 법의 내용을 이루는 용어나 원리가 다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법률의 문장은 가능한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안 되는 목적인 법의 정신을 단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9계명의 내용이나 정신이 매우 포괄적인 것은 그 시대에는 법률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된 상황이 아니어서 하나의 조문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각적인 해석이 요청되었다. 당시는 법과 도덕과 종교 내지는 시민들의 의식들이 미분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비롯한 법규범들은 시민들의 생활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의무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간에 법 이전의 도덕적 준칙이기도 했던 것이다.

현대 형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법익에 관한 죄로서 국가의 심판권(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국가재판권의 적절한 행사를 잘못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추상적 위험이 있는 수준이면 본죄가 성립고 범죄(성립)

80) <http://myhome.nets.go.com/cyclo/gospel/gospel142-5htm>.

의 주체도 선서한 증인이란 신분범으로 국한시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이것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을 중시한 결과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위증자체를 중대범죄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법제도와 법률문화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바탕을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볼 때 지금은 사소하여 중한 범죄로 보지 않은 위증죄가 인류 초기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 것은 그 시대는 단순한 사회였고 양식과 도덕이 지켜지던 시기였음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현대는 사회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해 인간 본성이 크게 악화되어졌고 생활과정에서 과거에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는 대수롭잖은 용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도덕 수준의 저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위증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내용이 크게 축소된 원인은 이와 같은 도덕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에서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인 법제도의 다양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위증죄 하나로서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던 것이 지금은 그 사안을 세분하여 성격에 따라 몇 개의 다른 제목의 범죄로 분산되어졌다.

예컨대 모세 시대에는 전반적인 거짓말을 범죄로 보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전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했다. 그래서 거짓증거에는 허망한 풍설이나 소문을 낸다거나 단순한 거짓말이나 거짓행위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같은 행위들은 일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안될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타인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다른 범죄로 처벌되어지는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모세 시대 광범위하게 해석되었던 위증죄 중에는 오늘날에는 시대적 바탕이 달라졌기 때문에 ①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② 위증죄로 계속 이어져 처벌되는 부분도 있고, ③ 법률의 분화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신용훼손죄 등과 같은 다른 전문적인 범죄로 재편되기도 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문이 요구하는 형식적 최소한의 행위로서만이 아니고 그

법규가 내포하는 정신적 배경까지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성경에 규정된 위증죄를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의 위증죄의 원형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위증죄의 도덕적 정신을 구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법적 규제는 최소한에 거치는 것이 좋으나 내면적 정신의 철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무리 세상이 발전적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서 성경의 법적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필요한 것이다.

<Abstract>

Study on Perjury in Old Testament

Lee, Tae-Eun

A Perjury realized a crime by witness, expert, translate, who is swore by law or an expert witness, judgement, translator swore by law.

In history, perjury is delivered from religious crime.

In 5 century Roman's Cannon Law punished a profanity.

In Deutsche's early law also punished one of a religious and egics viewpoint, but take off profanity defilement during revise criminal Law in 1942.

In this thesis perjury describe by ten commendment in old testament, just exatly considered what's perjury, what's conception of perjury in Bible, and why punish perjury.

This thesis consisted two major part si at first the Characteristic of perjury, Second, what is meaning of perjury is bibliotics.